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5. 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4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년 4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 가. 개정이유

주차장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주차요금 체계 조정

##### (가) 현행

- 최초 30분 기본요금 + 초과 10분 단위요금 + (1~3급지)2시간 초과시 기준요금 2배 부과

##### (나) 조정

- 최초 30분 기본요금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요금체계 조정하고 1~3급지 2시간 초과 가중요금 체계 폐지

#### (2) 주차요금 감면제도 일부조정

##### (가) 현행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 최초 1시간 면제, 1시간 경과 50% 할인, 부제은행차량과 카풀차량은 10% 할인

##### (나) 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 1시간 면제제도 폐지하고 80% 할인하고, 부제은행차량과 카풀차량 감면제도 폐지

#### (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기준 구체화

-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자 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추가.

#### (4)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 주차요금의 장기·고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5) 부설주차장설치면제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조항 신설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정의
- “노상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정의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정의

#### (6)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 기준조항 신설

-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
-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

- 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
- (7)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본 조례안 개정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 생각되는 것은 5~10분 등 30분 미만으로 주차하고 기본요금 3,000원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본요금 및 가중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매 10분당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자기가 주차한 시간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응한 조치라고 보여지나 관리수탁자의 수입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수탁관리자 모집시 사전에 관련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차요금 감면사항 개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종전에는 1시간 이내 주차시에는 요금을 면제하여 주고 1시간 이후에는 50% 감면해 주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80%만 할인토록 되어 있어 단기주차 이용시에는 이용자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사항이 있어야 하고, 또한 주차요금 미납 및 고액채납자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로 민원이 예상되니 운행제한장치 대상을 다소 완화 및 최소화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년월일 : 2001. 4. 1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주차장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차요금 체계 조정
  - 현행
    - 최초 30분 기본요금 + 초과 10분 단위요금 + (1~3급지) 2시간 초과시 기준요금의 2배 부과
  - 조정
    - 최초 30분 기본요금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요금체계 조정하고 1~3급지 2시간 초과 가중요금 체계 폐지
- 주차요금 감면제도 일부조정
  - 현행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최초 1시간 면제, 1시간 경과 50% 할인,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은 10% 할인
  - 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1시간 면제제도 폐지하고 80% 할인하고 부제운행차량과 카풀차량 할인제도 폐지
-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자격기준 구체화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자 중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으로 추가.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
  - 주차요금의 장기·고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부설주차장설치면제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조항 신설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정의
  - “노상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정의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정의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 기준조항 신설
  -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
  -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
-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예산조치 : 주차장 표지판교체는 추경에 반영조치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중 “노상주차장 하역주차구간의”를 “하역주차구간의”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 운용할 수 있다.

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 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가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④구청장은 주차장 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이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조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삭제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단, 법 제19조의제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 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이 되는 주차요금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 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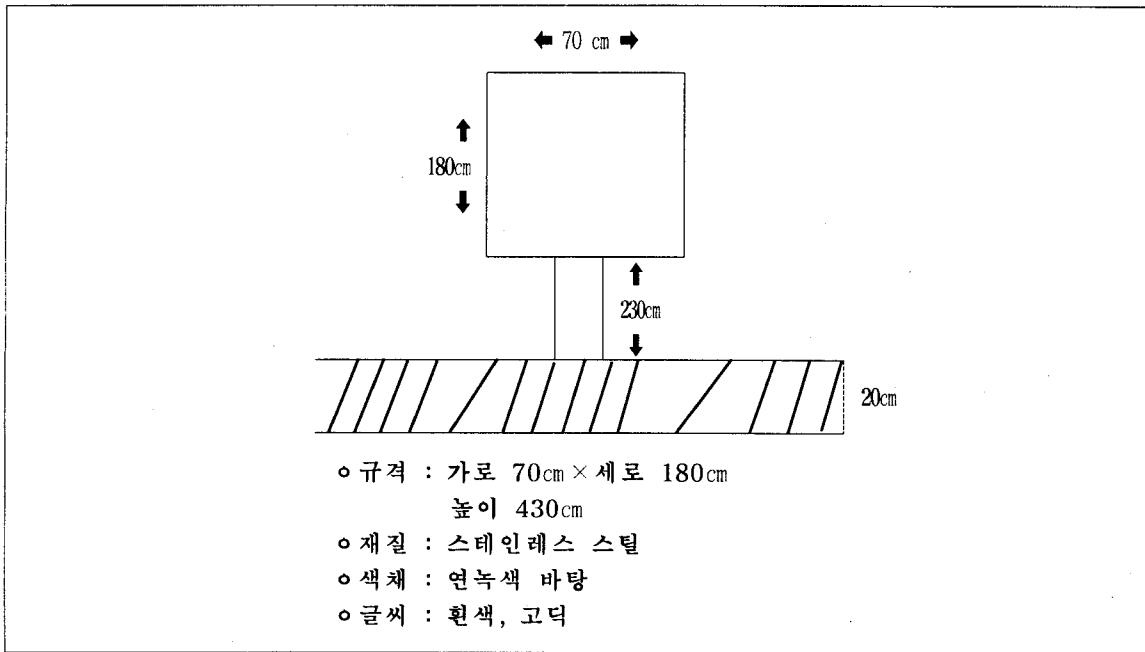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경인로·선유로·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 (1)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율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삭제)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7.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주차요금의 할인·할증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구청장은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 (삭제)
11.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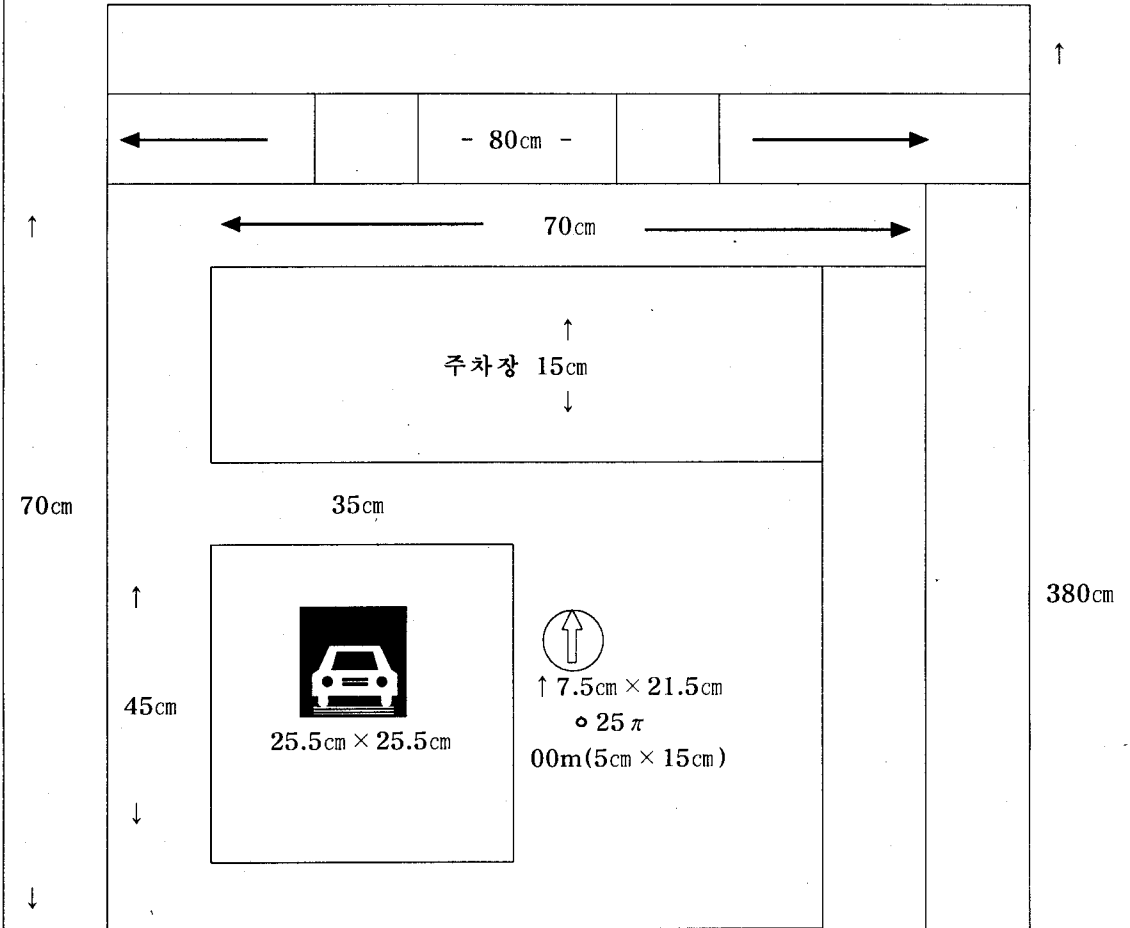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제14조제1항 관련)

<앞·뒷면>



- 규격 : 가로 80cm, 세로 70cm  
          높이 380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 글씨 : 고딕
- 색채 : 연녹색 바탕
- □주차장 : 군청색 바탕 흰색
- Ⓢ : 노랑바탕 군청색
- □자동차 : 노랑바탕 군청색



###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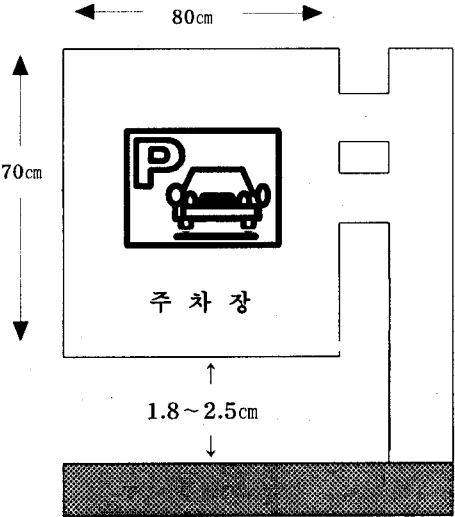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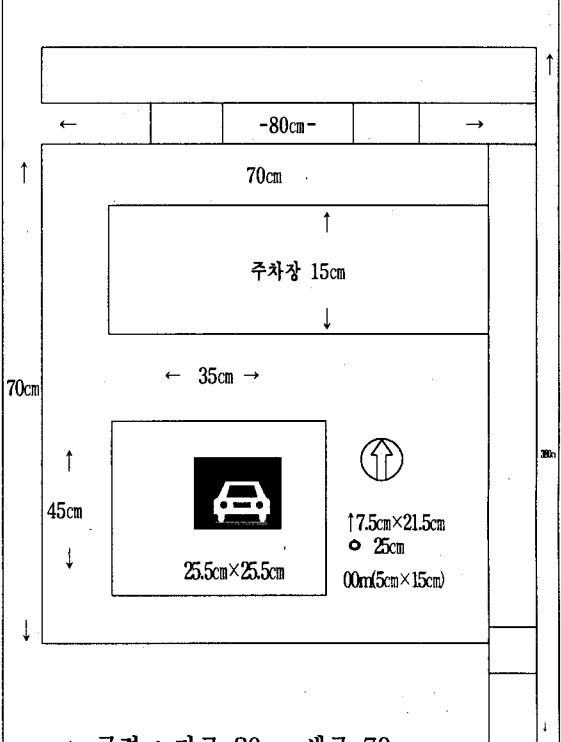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u>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의 주……. 다만, 노상주차장중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u></p> <p>②(생략)</p> <p>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p> <p>&lt;신설&gt;</p> <p>2~9 (생략)</p> <p>&lt;신설&gt;</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u></p> <p>②(현행과 같음)</p> <p>1. 주차쿠폰…….</p> <p>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3~10(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 설치)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u></p> <p>1. (생략)</p> <p>2. <u>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1. <u>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u></p> <p>2. <u>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u></p> <p>제4조(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①…</p> <p>…………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u></p> <p>3. <u>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u></p> <p>제4조의2(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u>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u></p> <p>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u>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계측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u></p> <p>②<u>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③<u>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가할 수 있다.</u></p> <p>④<u>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1항(생략)                      제6조제1항제1호(생략)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p> <p>3. (생략)                      &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7조(주차카드의 판매등) ①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매한다.</p> <p>제14조제1항, 제2항(생략)                      ③노의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 내 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한다.                      &lt;신 설&gt;</p>	<p>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제1항(현행과 같음)                      제6조제1항제1호(현행과 같음)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를 사용하는 방법                      3.(현행과 같음)                      ④구청장은 주차장 별도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7조(삭 제)</p> <p>제14조제1항, 제2항(현행과 같음)                      ③(삭 제)</p> <p>제16조(삭 제)</p> <p>제2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u>법 제 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u></p> <p>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u>영 제 10 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u></p> <p>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u>법 제 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u></p> <p>1. <u>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u></p> <p>2. <u>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를 사용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u></p> <p>3. <u>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를 가액으로 할 수 있다.</u></p> <p>4. <u>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u></p> <p>②<u>법 제19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노상주차장</th> <th colspan="4">노외주차장</th> </tr> <tr> <th colspan="2">2시간까지</th> <th>2시간 초과</th> <th rowspan="2">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h colspan="2">1회주차</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r> <tr> <th>1구획 최초 30분</th> <th>1구획 10분</th> <th>1구획 10분</th> <th>주간</th> <th>야간</th> <th>1구획 최초 30분</th> <th>1구획 10분</th>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3000</td> <td>1000</td> <td>2000</td> <td>5000</td> <td>-</td> <td>-</td> <td>2400</td> <td>800</td> <td>250000</td> <td>100000</td> </tr> <tr> <td>2급지</td> <td>1500</td> <td>500</td> <td>1000</td> <td>4000</td> <td>-</td> <td>-</td> <td>1500</td> <td>500</td> <td>100000</td> <td>60000</td> </tr> <tr> <td>3급지</td> <td>1000</td> <td>300</td> <td>600</td> <td>3000</td> <td>-</td> <td>-</td> <td>1000</td> <td>300</td> <td>100000</td> <td>40000</td> </tr> <tr> <td>4급지</td> <td>600</td> <td>200</td> <td>200</td> <td>2000</td> <td>5000</td> <td>-</td> <td>500</td> <td>200</td> <td>환승목적주차시 4000 기타 50000</td> <td>20000</td> </tr> <tr> <td>5급지</td> <td>300</td> <td>100</td> <td>100</td> <td>1000</td> <td>3000</td> <td>20000</td> <td>300</td> <td>100</td> <td>300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급지	3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50000	100000	2급지	1500	500	1000	4000	-	-	1500	500	100000	60000	3급지	1000	300	600	3000	-	-	1000	300	100000	40000	4급지	600	200	200	2000	5000	-	500	200	환승목적주차시 4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300	100	100	1000	3000	20000	300	100	30000	20000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 (안)</p> <p>단, 법 제19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을 감액한다.</p> <p>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 - 구획당)</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노상주차장</th> <th colspan="3">노외주차장</th> </tr> <tr> <th rowspan="2">1회 주차시 10분당</th> <th rowspan="2">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h rowspan="2">1회 주차시 10분당</th> <th colspan="2">월정기권</th> </tr> <tr> <th>주간</th> <th>야간</th> <th>주간</th> <th>야간</th> </tr> </thead> <tbody> <tr> <td>1급지</td> <td>1,000</td> <td>5,000</td> <td>-</td> <td>-</td> <td>800</td> <td>250,000</td> <td>100,000</td> </tr> <tr> <td>2급지</td> <td>500</td> <td>4,000</td> <td>-</td> <td>-</td> <td>500</td> <td>180,000</td> <td>60,000</td> </tr> <tr> <td>3급지</td> <td>300</td> <td>3,000</td> <td>-</td> <td>-</td> <td>300</td> <td>100,000</td> <td>40,000</td> </tr> <tr> <td>4급지</td> <td>200</td> <td>2,000</td> <td>50,000</td> <td>-</td> <td>200</td> <td>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td> <td>20,000</td> </tr> <tr> <td>5급지</td> <td>100</td> <td>1,000</td> <td>30,000</td> <td>20,000</td> <td>100</td> <td>30,000</td> <td>20,000</td> </tr> </tbody> </table>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주차		월정기권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구획 최초 30분	1구획 10분	주간	야간																																																																																																																																					
1급지	3000	1000	2000	5000	-	-	2400	800	250000	100000																																																																																																																																					
2급지	1500	500	1000	4000	-	-	1500	500	100000	60000																																																																																																																																					
3급지	1000	300	600	3000	-	-	1000	300	100000	40000																																																																																																																																					
4급지	600	200	200	2000	5000	-	500	200	환승목적주차시 4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300	100	100	1000	3000	20000	300	100	30000	20000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현행	개정(안)										
<p>-비고-</p> <table border="1" data-bbox="261 320 772 52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재료</th> <th colspan="2">색채</th> </tr> <tr> <th>바탕</th> <th>글씨(고딕)</th> </tr> </thead> <tbody> <tr> <td>공영주차장</td> <td>알루미늄 및 철판</td> <td>녹색</td> <td>흰색</td> </tr> </tbody> </table> <p>&lt;별지 제2호서식&gt; 노외주차장표지(제14조제1항 관련)</p>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li> <li>○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색(청색) 문자(흰색)</li> <li>내부표지판 : 바탕색(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li> <li>○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30cm, 세로25cm) 문자(가로17cm, 세로17cm)</li> </ul>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색	흰색	<p>- 규격 : 가로 70cm × 세로 180cm 높이 430cm</p> <p>-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p> <p>- 색채 : 연녹색 바탕</p> <p>- 흰색, 고딕</p> <p>&lt;별지 제2호서식&gt;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제14조제1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 가로 80cm, 세로 70cm 높이 380cm</li> <li>○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li> <li>○ 글씨 : 고딕</li> <li>○ 색채 : 연녹색바탕</li> <li>○ 주차장 : 군청색바탕 흰색</li> <li>○ 화살표 : 노랑바탕 군청색</li> <li>○ 자동차 : 노랑바탕 군청색</li> </ul>
구분			재료	색채							
	바탕	글씨(고딕)									
공영주차장	알루미늄 및 철판	녹색	흰색								



현 행	개 정 (안)																														
<p>&lt;별지 제6호서식&gt; (제18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input type="checkbox"/> 중지 부설주차장일반이용 신고서</td> <td style="width: 30%;"><input type="checkbox"/> 폐지</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처리기일 5일</td> </tr> <tr> <td>신고인 ①성 명</td> <td>②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r> <td>부설주차장 ③주 소</td> <td>④전화 번호</td> <td></td> </tr> <tr> <td>⑤명 칭</td> <td>⑥주차장의 형태</td> <td></td> </tr> <tr> <td>⑦위 치</td> <td>⑧규 모 (대 m)</td> <td></td> </tr> <tr> <td>⑨공용신고번호</td> <td>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td> <td></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td> </tr> <tr> <td>⑪ <input type="checkbox"/> 이용중지 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 시설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td> <td>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td> </tr> <tr> <td colspan="3">⑬ 이용중지 또는 폐지사유</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 없 음</td> </tr> </table>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 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input type="checkbox"/> 중지 부설주차장일반이용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폐지	처리기일 5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부설주차장 ③주 소	④전화 번호		⑤명 칭	⑥주차장의 형태		⑦위 치	⑧규 모 (대 m)		⑨공용신고번호	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⑪ <input type="checkbox"/> 이용중지 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 시설규모	대	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⑬ 이용중지 또는 폐지사유					수수료 없 음	<p>&lt;별지 제6호서식&gt; : 삭제</p>
<input type="checkbox"/> 중지 부설주차장일반이용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폐지	처리기일 5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부설주차장 ③주 소	④전화 번호																														
⑤명 칭	⑥주차장의 형태																														
⑦위 치	⑧규 모 (대 m)																														
⑨공용신고번호	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⑪ <input type="checkbox"/> 이용중지 시설규모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 시설규모	대	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 <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⑬ 이용중지 또는 폐지사유																															
		수수료 없 음																													
<p>신고 재 호</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중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input type="checkbox"/> 폐지</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폐지)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